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35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김은혜 · 서천호 · 정동만
김종양 · 정성국 · 이성권
조정훈 · 김선교 · 김미애
최수진 · 김승수 · 안상훈
곽규택 · 김성원 · 조배숙
고동진 · 김소희 · 이양수
조승환 · 김상훈 · 윤상현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교통수단의”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교통수단”을 “공중교통수단등”으로, “다음 각 목의”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로, “시설을”을 “시설 또는 그 이용을 보조하는 바목의 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교통수단”을 “공중교통수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중교통수단”을 “공중교통수단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설치된 공중교통수

단등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u>공중교통수단의</u>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 ----- -----제5호에 따른 공중 <u>교통수단등의</u>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 <u>공중교통수단</u>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u>시설</u> 을 말한다.	5. <u>공중교통수단등</u> ----- ----- <u>가목부</u> <u>터 마목까지의</u> ----- <u>시설 또는 그 이용을 보조하</u> <u>는 바목의 시설</u>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설></u>	바. 「 <u>공항시설법</u> 」에 따른 <u>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u>

	<u>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 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 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u>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생 략)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현 행과 같음)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u>공중 교통수단</u> 의 설계, 설치, 관리상 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u>공중</u> <u>교통수단등</u>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u>공중교통수 단</u> 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u>공중교통수</u> <u>단등</u> ----- ----- ----- -----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에 한정한다. ④ (생략)	----- ----- ----- ----- -----. ④ (현행과 같음)
---	---